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좌석안전띠 착용의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긴급자동차에서 작전 등과 관련현 없는 자동차 등 제외〉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56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선희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5. 9. 22.
3. 회부연월일 : 2025. 9. 23.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서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또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행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군용차량에 대해서도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좌석안전띠 착용의 예외적인 경우를 직접 열거하고,

좌석안전띠 착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 자동차’에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군용차량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 Ⅲ. 검토의견

개정안 제50조제1항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좌석안전띠 착용의 예외 사유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좌석안전띠 착용의 예외 사유의 하나인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는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호~제9호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br>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 <sup>(이하 "운전자"라 함)</sup> 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 <sup>(이하 "좌석안전띠"라 함)</sup> 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br><br><br><br><br><br><br><br><br><br><br><b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br><br><br><br><br><br><br> |
| <신 설>                                                                                                                                                                                                                                                                                                     | 1.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br><u>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u>                                                                             |

| 현행    | 개정안                                                                                                 |
|-------|-----------------------------------------------------------------------------------------------------|
| <신 설> | 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
| <신 설> |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
| <신 설> | 3.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
| <신 설> | 4. 긴급자동차(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
| <신 설> |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
| <신 설> |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
| <신 설> |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

| 현행                                                    | 개정안                                                                                                                                                                                                                                        |
|-------------------------------------------------------|--------------------------------------------------------------------------------------------------------------------------------------------------------------------------------------------------------------------------------------------|
| <p>&lt;신설&gt;</p> <p>&lt;신설&gt;</p> <p>② ~ ⑩ (생략)</p> | <p>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p> <p>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아니하는 때</p> <p>9.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때</p> <p>② ~ ⑩ (현행과 같음)</p> |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함. 이하에서 동일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sup>1)</sup> 그리고 같은 조항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sup>2)</sup>

1)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6의2. (생략)

7. ~ 13. (생략)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단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3)는 안전벨트 착용의 예외 사유로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제1호),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제2호) 및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제4호) 등 8개의 사유를 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내용을 상향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죄형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 ~ 10. (생략)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

좌석안전띠 착용의 예외사유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를 포함함.<sup>4)</sup>

개정안 제50조제1항제4호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면서도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긴급차량 중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 개정안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이 없는 국군의 자동차 등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됨.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개정안 제50조제1항제4호는 2024년 12월 공군 병사들이 저녁 식사를 한 뒤 군용트럭을 타고 생활관으로 복귀하는 중 공군 부대안에서 가로수를 들이받는 화물칸에 있던 병사가 도로에 떨어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고려한 것임.<sup>5)</sup>

4)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 11. (생략)

5) 서울신문 2024년 12월 20일 기사, “충주 공군부대 교통사고.. 병사 1명 숨지고 9명 다쳐”

개정안을 통해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이 없는 국군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인명피해가 크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에서 현행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4조<sup>6)</sup>제3항은 모든 군용차량의 운전자는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및 각 군 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단서는 군용 화물차 후석 등을 이용해 인원을 수송할 경우, 행정이동 시에는 반드시 방탄헬멧, 안전띠 등을 착용하도록 하되, 작전이나 훈련 등 전술적 상황에서는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안전띠는 착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 제50조제1항제4호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좌석안전띠 착용요건인 작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작전(作戰)은 사전적으로 군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전투, 수색, 행군, 보급 따위의 조치나 방법을 의미하고,<sup>7)</sup>

---

6)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4조(수송 안전관리) ① 모든 군용차량은 차량별 용도에 맞게 운용한다.

② 모든 군용차량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적재용량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및 각군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용차량의 운전자는 타고 있는 사람 또는 적재하고 있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및 각군 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군용차량의 운전자는 운전하려는 차량에 적합한 군용차량 운전면허(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평시 인원 수송은 군용차량의 실내 좌석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용 화물차 후석 등을 이용해 인원을 수송할 경우, 행정이동 시에는 반드시 방탄헬멧, 안전띠 등을 착용해야 한다. 단, 작전이나 훈련 등 전술적 상황에서는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안전띠는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기타 안전관리 사항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각 군 참모총장이 각 군 규정을 발전시킨다.

「군수품관리법」, 「국군조직법」 등의 법률에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작전의 의미에 보급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용 차량을 작전 및 군사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목적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보임. 이를 고려하여 대통령령 등에 작전 및 군사훈련의 범위를 위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
| 문 의 처         |
| 02) 6788-5345 |